

第134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附錄)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面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面
2.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面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2面
3.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面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面
4.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面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3面
5.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5面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3面
6.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36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5
----------	-----

제출년월일 : 2003. 9.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2002.11.29)의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안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단서) 나.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계획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 (2002.12.30)됨에 따른 용어정리(안 제21조의2, 안 제22조)
- 다. 대부료의 특례조항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 22조의2 제1항)
- 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 (안 제24조의2)
 - 세입·세출예산의 현금 ⇒ 세입·세출 외 현금
- 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 (안 제27조 제1항)
-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탁의 종류” 관련조문 변경.(안 제30조의3)

3. 개정근거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8호, 2002.11.29)

나. 관련지침 : 재무45500- 631(2003.2.13)호에 의한 정비방침

4.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제1항중 “연5%”를 “연4%”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중 “연8%”를 “연6%”로 한다.

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100조의3제2호”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100조의3제1항 제2호”로 하고, 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도시재개발법 제6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로 한다.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제1항중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후단에 신설한다.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제4항중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제1항중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를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로 한다.

제30조의3(신탁의 종류)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 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부료에 대한 특례 및 연체요율 적용례)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의2 제1항, 제2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과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 및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일(2002년 11월 29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7호(생략)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연4%..... 제1호 내지 제7호(현행과 같음)
②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내지 제4호(생략)	②.....연6%..... 제1호 내지 제4호(현행과 같음)
③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내지 제5호(생략)	③.....연6%..... 제1호 내지 제5호(현행과 같음)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u>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100조의3 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u>	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100조의3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1. 구청장이 <u>도시재개발법</u>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 인가당시의 건물 소유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3(생략)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③(생략)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u>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u>의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재산 2. (생략) ⑤~⑪(생략)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구유재산은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생략)	1. <u>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u>..... <u>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u>..... 2~3(현행과 같음)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③(현행과 같음) ④..... 1.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u>의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재산 2. (현행과 같음) ⑤~⑪(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①..... <u>다만</u>..... <u>영리목적(농경지제외)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③(생략)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①~③(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영제7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관리하되, 종로구재무회계규칙제7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④..... <u>세입세출의</u>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u>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년 10퍼센트로 한다.</u>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①..... <u>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 할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u>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신탁의 종류) <u>영 제102조의4</u> 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3(신탁의 종류) <u>영 제102조의5</u>